



제427회 국회 (임시회)
제3차 환경노동위원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심의위원회

위원 요건 구체화 등 〉

■ 이수진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7553호)

2025. 7.

환 경 노 동 위 원 회

전문위원 한석현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3
1.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심의위원회 위원 요건 구체화 등	3
2. 근로복지공단 비상임이사 구성 중 노·사 추천 위원 개정	10

I. 제안경위

2025년 1월 15일 이수진위원이 대표발의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2025년 1월 1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다양한 사회적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심의 및 결정 과정에서 정부, 노동조합, 기업, 시민단체와 같은 비정부기구(NGO) 등 여러 이해관계자가 협력하여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의사결정을 내림으로써 사회적 갈등요소를 협력요소로 변환하는 정책 관리체제가 활용되고 있음. 이러한 흐름 속에서 정부는 각종 위원회를 통해 다양한 정책심의와 결정을 하는 데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으며, 특히 노동계의 참여는 노동자의 권익을 대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

그러나, 각종 위원회에서 노동계를 대표하는 참여자를 지칭하는 용어로 ‘노동계’, ‘근로자 대표’, ‘전국적 규모의 노동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등이 혼재되어 사용되고 있어 정책심의 및 결정 과정에서 노동계의 일관된 목소리를 전달하는 데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특히, 각 위원회가 특정 노동단체의 대표성을 인정하거나 배제할 경우, 노동계를 대표하는 참여자 선정 과정에서 법률 해석의 모호성으로 인한 논란이 발생할 우려가 큼.

이에, 노동계를 대표하는 참여자를 ‘전국적 규모의 총연합단체인 노동단체가 추천하는 사람’으로 명확히 정의함으로써, 노동계 참여자의 대표성을 강화하고 법적 해석의 일관성을 확보하며, 정책심의 및 결정 과정에서 노동자 권익을 보다 효과적으로 반영하려는 것임(안 제8조, 제16조제3항 및 제107조제3항).

Ⅲ. 검토의견

1.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심의위원회 위원 요건 구체화 등(안 제8조)

가. 개정안의 주요내용

개정안은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심의위원회의 위원을 구체화하여, 전국적 규모의 총연합단체인 노동단체·전국적 규모의 사용자단체의 추천을 받은 자를 근로자·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도록 하고(안 제8조제3항·제4항 신설),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비상임위원 구성 중 노·사 추천위원을 기존 근로자·사용자 단체에서 전국적 규모의 총연합단체인 노동단체, 전국적 규모의 사용자단체로 구체화하는 내용임(안 제107조제3항).

[표]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8조(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심의위원회) ①·② (생략) <u><신설></u>	제8조(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심의위원회) ①·② (현행과 같음) <u>③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은 전국적 규모의 총연합단체인 노동단체의 추천을 받아 고용노동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u>
<u><신설></u>	<u>④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은 전국적 규모의 사용자단체의 추천</u>

③ · ④ (생략) 제107조(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① · ② (생략) ③ 재심사위원회의 위원 중 5분의 2에 해당하는 위원은 제5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u>근로자 단체 및 사용자 단체</u>가 각각 추천하는 사람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근로자 단체 및 사용자 단체가 추천한 사람은 같은 수로 하여야 한다. ④ ~ ⑩ (생략)	<u>을 받아 고용노동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u> ⑤ · ⑥ (현행 제3항 및 제4항과 같음) 제107조(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 ----- ----- -----<u>근로자 단체(전국적 규모의 총연합단체인 노동단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 및 사용자 단체(전국적 규모의 사용자단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u>----- ----- ----- ----- ----- ----- ④ ~ ⑩ (현행과 같음)
--	---

나. 검토의견

현행법은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에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심의위원회를 두고 있음.

위원회의 구성과 관련하여 법 시행령 제4조는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과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 및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을 각 5명씩

구성하며,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은 총연합단체인 노동조합이,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은 전국을 대표하는 사용자단체가 추천함.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은 고용노동부차관, 고용노동부 공무원 1명,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과 사회보험 또는 산업재해 예방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3명으로 구성됨.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심의위원회 구성 관련 법 조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조(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심의위원회) ①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에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근로자를 대표하는 사람, 사용자를 대표하는 사람 및 공익을 대표하는 사람으로 구성하되, 그 수는 각각 같은 수로 한다.

③ 위원회는 그 심의 사항을 검토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보조하게 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④ 위원회 및 전문위원회의 조직·기능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4조(위원회의 구성)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각각 고용노동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은 총연합단체인 노동조합이 추천하는 사람 5명
2.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은 전국을 대표하는 사용자 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5명
3.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은 다음 각 목의 사람 5명

가. 고용노동부차관

나. 고용노동부에서 산업재해보상보험 업무를 담당하는 고위공무원 또는 산업재해 예방 업무를 담당하는 고위공무원 중 1명

다.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과 사회보험 또는 산업재해 예방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3명

한편 현행법은 산재보험급여와 관련한 근로복지공단의 심사결정에 불복하여 제기되는 재심사청구에 대하여 심리·재결하기 위하여 산업

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를 두고 있음.

법 제107조제3항은 재심사위원 중 5분의 2에 해당하는 위원은 일정 자격을 갖춘 자 중 근로자 단체 및 사용자 단체가 각각 추천하는 사람으로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재심사위원회의 세부적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는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운영규칙」은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근로자 단체 및 사용자 단체에서 적격자를 추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구성 관련 법 조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7조(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① 제106조에 따른 재심사 청구를 심리·재결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에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이하 “재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재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 중 2명은 상임위원으로, 1명은 당연직위원으로 한다.

③ 재심사위원회의 위원 중 5분의 2에 해당하는 위원은 제5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근로자 단체 및 사용자 단체가 각각 추천하는 사람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근로자 단체 및 사용자 단체가 추천한 사람은 같은 수로 하여야 한다.

④ ~ ⑩ (생략)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운영규칙」 제41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위원장은 재심사위원회가 산재보험의 최고기관임을 감안하여 각계의 전문가로 위원회가 구성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위원의 정수는 법 제107조제2항에 따르되, 법 제107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춘 자로 한다.

③ 위원장은 다음 각호의 관련 단체에서 적격자를 추천할 수 있도록 협의할 수 있다.

1. 대한의사협회
2. 대한변호사협회
3. 한국노동조합총연맹
4.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5. 한국경영자총협회6. 한국노동법학회7. 한국노사관계학회8. 대한산업보건협회9. 한국공인노무사회10.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단체 |
|---|

위와 같이 현행법령이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심의위원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의 위원으로 총연합단체인 노동조합/근로자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전국을 대표하는) 사용자단체가 추천하는 사람을 규정하고 있는 것은 산업재해의 당사자인 근로자와 사용자의 참여를 보장하고 관련한 의견을 충분히 논의하여 다양한 근로자·사용자의 입장이 제도 운영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임.

이에 개정안은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으로서 노동계 참여자의 대표성을 강화하여 노동자 권익을 보다 효과적으로 반영하기 위하여 기존의 총연합단체인 노동조합/근로자단체가 추천하는 사람을 ‘전국적 규모의 총연합단체인 노동단체’가 추천하는 사람으로 개정하려는 것임.

이러한 개정안은 개별 노동조합에 비해 다양한 산업과 직역의 근로자로 구성되어 있는 총연합단체인 노동단체에 추천권을 부여함으로써 위원의 대표성을 제고할 수 있다는 입법적 의의가 있고, 정책심의 및 결정 과정에서 노동자 권익의 집단적인 반영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되는 측면이 있음.

다만, 개정안에 따르면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의 위원 구성 추천 권한이 명시적으로 기존 근로자/사용자단체에서 ‘총연합단체인 노동단체’와 ‘전국적 규모의 사용자단체’에 한정되게 되는 문제점이 있음.

특히, 총연합단체에 가입하지 않은 미가맹 노동조합 조합원이 전체 노동조합원의 17.5%를 차지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들 노동조합의 근로자대표 추천권한을 법률에서 원천적으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 2023년 총연합단체별 조합원 수 비교 >

구 분	인원수	비율
한국노동조합총연맹	1,160,162명	42.4%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1,086,618명	39.7%
한국장애인노동조합총연맹	7,821명	0.3%
전국노동조합총연맹	1,441명	0.1%
국민통합노동조합총연맹	1,068명	0.0%
대한민국노동조합총연맹	511명	0.0%
미가맹	479,758명	17.5%
합 계	2,737,379명	100%

자료 : 고용노동부, 『2023 전국노동조합 조직현황』, 2024.12.

한편 고용노동부는 추천 자격 규정을 전국적 규모의 총연합단체, 전국적 규모의 사용자 단체로 제한하는 방안은 위원회의 구성을 다양하게 하려는 설립 목적과 취지에 맞지 않고, 산업·고용구조의 변화에 따

큰 위험 요인이 복잡화되고 있어 청년, 여성, 비정규직 등 다양한 근로자·사용자의 의견을 균형있게 반영하여 전문성·대표성 및 공정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으므로 신중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2. 근로복지공단 비상임이사 구성 중 노·사 추천 위원 개정(안 제16조)

가. 개정안의 주요내용

개정안은 근로복지공단의 비상임이사 구성 중 총연합단체인 노동조합이 추천하는 사람을 전국적 규모의 총연합단체인 노동단체가 추천하는 사람으로, 전국을 대표하는 사용자단체가 추천하는 사람을 전국적 규모의 사용자단체가 추천하는 사람으로 개정하려는 것임(안 제16조).

[표]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6조(임원) ①·② (생략)	제16조(임원) ①·② (현행과 같음)
③ 비상임이사(제4항에 따라 당연히 비상임이사로 선임되는 사람은 제외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6조제3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임명한다. 이 경우 제1호와 제2호에 해당하는 비상임이사는 같은 수로 하되, 노사 어느 일방이 추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 ----- ----- ----- ----- ----- ----- ----- ----- -----.
1. <u>총연합단체인 노동조합이</u> 추천	1. <u>전국적 규모의 총연합단체인</u>

하는 사람	<u>노동단체가</u> -----
2. <u>전국을 대표하는</u> 사용자단체가	2. <u>전국적 규모의</u> -----
추천하는 사람	-----
3. (생략)	3. (현행과 같음)
④·⑤ (생략)	④·⑤ (현행과 같음)

나. 검토의견

현행법 제16조는 근로복지공단의 임원 중 비상임이사 중 일부를 총연합단체인 노동조합이 추천하는 사람, 전국을 대표하는 사용자 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중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6조제3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임명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러한 현행법의 취지는 산업재해보상보험 관련 업무를 실질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근로복지공단의 비상임이사에 총연합단체인 노동조합이 추천하는 사람, 전국을 대표하는 사용자 단체가 추천하는 사람을 임명하여 이사회를 구성을 다양하게 하고 다양한 근로자·사용자의 의견을 균형있게 반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임.

이때 개정안은 공단 비상임이사의 추천 권한을 총연합단체인 노동조합에서 ‘전국적 규모의 총연합단체인 노동단체’, 전국을 대표하는 사용자 단체에서 ‘전국적 규모의 사용자 단체’로 개정하여 노동계 참여자의 대표성을 강화하고 법적 해석의 일관성을 확보하려는 취지로 보

임.

이러한 개정안을 통해 다양한 산업과 직역의 근로자로 구성되어 있는 총연합단체인 노동단체에 추천권을 부여함으로써 근로복지공단 비상임이사의 노동계에 대한 대표성을 제고할 수 있다는 입법적 의의가 있고, 공단의 업무 관련 정책심의 및 결정 과정에서 노동자 권익의 집단적인 반영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되는 측면이 있음.

한편 고용노동부는 추천 자격 규정을 전국적 규모의 총연합단체, 전국적 규모의 사용자 단체로 제한하는 방안은 이사회 구성을 다양하게 하려는 설립 목적과 취지에 맞지 않고, 산업·고용구조의 변화에 따른 위험 요인이 복잡화되고 있어 청년, 여성, 비정규직 등 다양한 근로자·사용자의 의견을 균형있게 반영하여 전문성·대표성 및 공정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으므로 신중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문 의 처
02)6788-5540